#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

(주야간보호)



(2014. 9. 19. 개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	계약당사자							
이용자 (갑)	성명	(인)	등 급 (인정번호)					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				
	주 소							
	기 타	□ 일반 □ 50%경감	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			
제공자 (을)	시설명		시설종류					
	시설장 성명	(인)	연락처					
	주 소					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'갑'의 ( )				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				
	주 소							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## 제2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○○○선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제3조(급여범위)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 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 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#### 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- ② '갑'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 다만, 이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.

이용요일	□ 월 □ 화 □ 수 □ 목 □ 금 □ 토 □ 일							
이용시간	오전 오후	시	분	~	오전 오후	시	분	

- ※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'을'에게 연락을 취해야함.
- ③ '을'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요일	시간	비고
월~금	(બી Al) 08:00~22:00	(예시)
토	(બ/시) 08:00~18:00	공휴일 제공여부

④ '을'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을')과 협의하여 당월〇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.

#### 제5조(계약자 의무)

- ① '갑'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월 이용료 납부의무
  - 2.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
 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 - 4. 기타 '을'과 협의한 규칙 이행

- ②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 - 2. 급여 제공시간에 '갑' 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'병' 에게 통보
  - 3. '갑'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'갑'(또는 '병') 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
  -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 - 5. '갑'의 식사제공, 이용상담, 이용편익 제공
  - 6. '갑'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
  - 7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 - 8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  - 9.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- ③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 - 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  -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  - 4.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  - 5.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

# 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 - 2.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'갑'(또는 '병')의 동의 없이 '을'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
- ② '을'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 - 2. '갑'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 - 3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 - 4.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 -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 - 6.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

## 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'을'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- ③ '갑'(또는 '병')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시설 내에 '갑'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을'은 등기,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'갑'(또는 '병')에게 송달처리 한다.

### 제8조(미이용 비용산정)

- ① '을'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'갑'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(월 ~ 금요일)기준으로 한다.

# 제9조(이용료 납부)

-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③ '을'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○일에 정산하고 '갑'(또는 '병')에게 ○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다.
- ④ '갑'은 매월 이용료를 ○○○○로 ○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⑤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10조(재계약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- 3.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
- 4. 기타 '갑'과 '을'이 필요한 경우

### 제11조(개인물품)

- ① '갑'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'갑'이 구비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하여

사용하여야 한다.

# 제12조(시설관리)

- ① '을'은 '갑' 또는 '병'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### 제13조(건강관리)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갑'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'병'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'병'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
- ④ '을'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'갑'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'갑'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# 제14조(시설물 배상)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(또는 '병')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# 제15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'을'은 즉시 '병'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16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'갑'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- ④ '을'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- 제17조(기록 및 공개)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(또는 '병'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제18조(배상책임)

- ① '을'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  - 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상태 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4.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 - 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 -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-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- 4. '갑'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# 제19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 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년 월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과 '병'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**'**을' 시설장 (인)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'갑' 이용자 (인)

'병'대리인(보호자) (인)

#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00.00.00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		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		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		
10시간 이상 ~12시간 미만			
12시간 이상			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

- 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-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)	7.5%

#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

### 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: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.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.

# 2) 세부기준

- 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- (2) 이·미용비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### 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1) 기본원칙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### 2) 세부기준

- (1)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: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 납 가능,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 토록 함
- (2)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: 일률적으로 제 공되는 일상용품(휴지, 비누, 수건, 실내화 등)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
- (3) 각종 프로그램 비용 :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 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. 단,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

#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 계획서

○ 성 명:

0 주 소:

○ 급여종류 : □ 방문요양 □ 방문목욕 □ 방문간호

□ 주・야간보호 □ 단기보호

# 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일자	이용여부	일자	이용여부	일자	이용여부
1		11		21	
2		12		22	
3		13		23	
4		14		24	
5		15		25	
6		16		26	
7		17		27	
8		18		28	
9		19		29	
10		20		30	
				31	

※ 기타:

※ 예) 이용(○), 미이용(×)

년 월 일

이 용 자: (인)

장기요양기관: (인)

장기요양급여 종결( □ 신청 □ 안내)서
○ 성 명: ○ 주 소: ○ 계약기간:
<ul><li>○ 이용기간 :</li><li>○ 급여종류 : □ 방문요양 □ 방문목욕 □ 방문간호</li><li>□ 주・야간보호 □ 단기보호</li></ul>
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급여(□이용 □제공)을 종결신청 (안내) 합니다.
- 아 래 -
1. 종결사유 □ 타기관이용 □ 타서비스이용 □ 등급변동 □ 장기입원 □ 사망 □ 계약기간종료 □ 기타( )
2. 종결일자 :
년 월 일
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장 (인)

#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

○ 성 명:

○ 주 소:

○ 계약기간 :

○ 이용기간 :

○ 급여종류 : □ 방문요양 □ 방문목욕 □ 방문간호

□ 주・야간보호 □ 단기보호

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	구	분	금액(원)	내 역
	총	계		
요양보험		소 계		
부담비용	요양	급여비용(○○%)		
		소 계		
개 인	향 요	급여비용(○○%)		
부담비용	비급여	재가급여 월한도액		
	11114	초과금액		

※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년 월 일

장기요양기관장 (인)

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
<ul> <li>○ 성 명:</li> <li>○ 주 소:</li> <li>○ 이용기간:</li> <li>○ 급여종류: □ 방문요양 □ 방문목욕 □ 방문간호</li> <li>□ 주・야간보호 □ 단기보호</li> </ul>
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1. 납부일자 :
년 월 일
장기 9 양기관장 (영)

#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	명	:	(생년월일 : )	)
マ	,			

주 소 :

# 1. 수집대상정보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### 2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이 용 자 : (인)